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65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6월 2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 6. 28. ~ 2023. 7. 11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권형숙	1690.○.22.	0178200274100002881	₩5,040,000	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
2	임기범(하성마케팅)	1993.○.15.	0178200274100006029	₩531,000	전라북도 전주시 숫대 2길
3	최방락	1972.○.22.	0178200274100005934	₩22,302,000	경기도 안산시 감골 2로
4	윤제원	1978.○.08.	0178200274100005933	₩3,540,00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
5	이병선	1967.○.16.	0178200274100006026	₩7,08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모악로
6	한돈영	1961.○.05.	0178200274100006027	₩12,744,000	전라북도 전주시 모래내 1길
7	손진찬	1961.○.16.	0178230274100000178	₩17,887,200	경기도 수원시 파장로 22번길
8	박진원	1979.○.27.	0178200274100009002	₩13,381,200	전라북도 남원시 월매길
9	김철현	1981.○.10.	0178230274100000202	₩618,000	전라북도 전주시 우전로
10	정다은	1984.○.20.	0178230274100000203	₩1,050,600	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
11	쥬리케이알앤디	110111- 4152429	0178200274100002979	₩14,337,000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5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주식회사 찬누리	200111-0439062	0178200274100011095	₩6,637,500	광주 북구 경열로 240
13	강안숙	1960.○.06.	0178220274100003130	₩2,505,100	광주 북구 하서로 229 번길
14	박홍	1971.○.10.	0178200274100004234	₩8,058,960	광주 북구 서암대로 90 번길
15	(주)유엔아이디엔씨	200111-0528170	0178230274100000207	₩4,177,500	광주 북구 북문대로 17
16	조환희	1988.○.17.	0178200274100006001	₩9,558,000	전남 목포시 하당로 289 번길
17	최홍석	1988.○.23.	0178200274100008991	₩22,302,000	전라남도 목포시 죽산로
18	이남진	1967.○.05.	0178230274100000176	₩11,709,800	전남 목포시 삼학로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☎ 062-457-1596, 159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